SAHA UNIVERSAL DESIGN CHECKLIST

사하형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CONTENTS

체크리스트 개요

01.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의 이해

1.1 유니버셜디자인(UD)과 도시환경

1.2 사하에서는 왜 지금 유니버셜디자인(UD)인가?

1.3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SHUD)

1.4 사하형유니버셜디자인(SHUD)의 원칙

02.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 체크리스트의 적용

2.1 SHUD 체크리스트의 적용대상

2.2 맞춤형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Minimum Check 10

2.3 SHUD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실천

2.4 사업시행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2.5 사업별 SHUD 체크리스트의 운영

체크리스트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 체크리스트

가 로 / 공 원 / 공공 건축물 / 주거단지

Minimum Check 10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Minimum Check 10

체크리스트 개요

SAHA UNIVERSAL DESIGN CHECKLIST

01.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 의 이해

1.1 유니버셜디자인(UD)과 도시환경
1.2 사하에서는 왜 지금 유니버셜디자인(UD)인가?
1.3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SHUD)
1.4 사하형유니버셜디자인(SHUD)의 원칙

유니버셜디자인(UD)과 도시환경

■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의 전개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제품, 건물, 환경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개념

.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총체적 개념은 영국의 건축가 겸 인권운동가 셀윈 골드스미스(1932~2011)가 저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Designing for the Disabled)' 에서 정립.

.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1941~1998)에 의해 널리 알려졌으며, 메이스는 "특별한 '장애인용 디자인'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고 주장. 이 후 유니버설 디자인은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언어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의 불편까지 배려하는 개념으로 확장.



■ 캐나다 밴쿠버의 롭슨 광장 계단(1980) 건축가 아서 에릭슨에 의해 장애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용자만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대표사례



■ 도시 환경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 있으며, 편의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 속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유니버셜(포괄적) 개념을 공유가 우선되어져야 함.

. 도시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즉 개인의 주택은 물론 주거 단지, 교통시설, 관공서, 백화점 등의 공공시설과 직장, 놀이터, 학교 등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계 지침의 필요성 인식.

■ 선진국에서는

. 노르웨이 정부는 '유니버설 디자인 행동계획' 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사회시설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 스페인 정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과 노약자의 시설 접근성 차별을 철폐하는 '국가접근성계획' 을 추진함.

. 일본은 국토 교통성이 2005년 수립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을 지침으로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시설 및 이용 프로그램에서의 물리적 차별을 최소화한 디자인 해법을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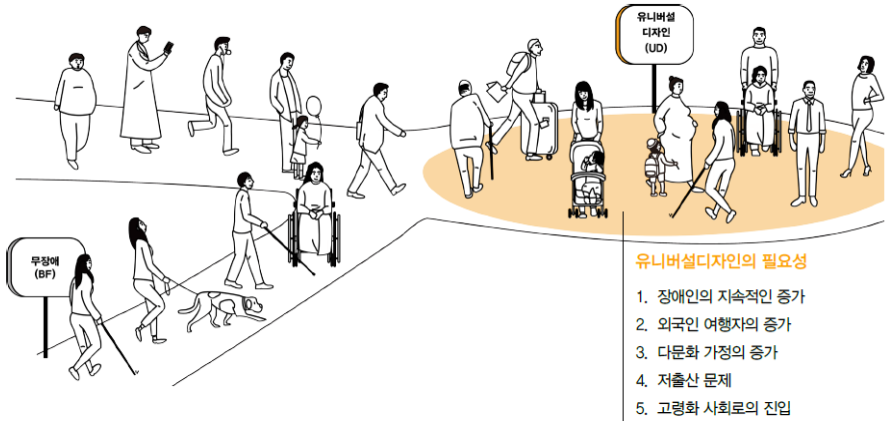
사하에서는 왜 지금 유니버설디자인(UD)인가?

. 사하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도시구성원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 특히 신평 장림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17년 7월 현재 베트남(411명), 중국(264)를 포함하여 총 1,220명과 북한 이탈주민 140세대 183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임.

. 근래에 와서는 감천문화마을과 다대포 음악분수 등의 관광자원으로 인하여 외국인 방문자도 급증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공간은 기성 시가지 내 고밀도 개발과 노후화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적 요소로 작용함.



. 여성친화도시 사하에서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연령, 성별, 장애로 인해 도시 공간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지역 사회를 조성해나기 위해 지역 내 도시 공간들이 형성되는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체적이며 생활 밀착형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함.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SHUD)

■ 사하형 유니버셜 디자인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대두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사하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연령,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도시 공간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 공간들이 형성되는 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니버셜 디자인(UD)개념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따라서 사하구의 현황과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 가능한 수단으로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형 UD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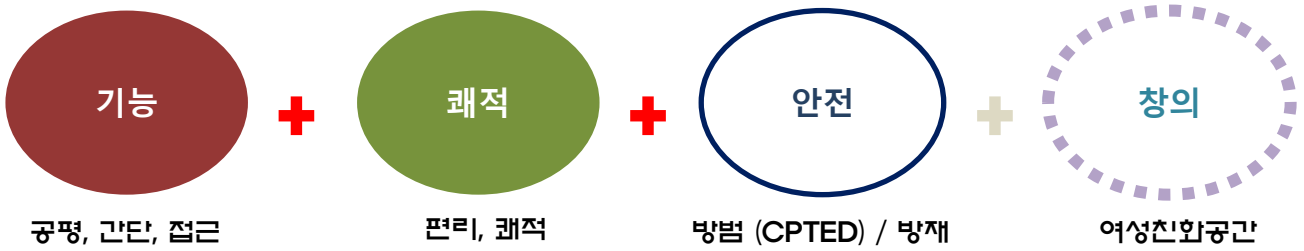
. **사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 공간을
  - 사하구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자, 여행자 및 일시 체재자 등을 포함

. 다양한 **이용자 관점**을 중시하고, 폭넓은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 후
  - 이동, 접근, 이용

.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시공성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SHUD)의 원칙

UD + CPTED (기능성 + 쾌적성 + 안전성, + 창의성)



. 메이스의 유니버셜 디자인 7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디자인 원칙,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포괄적이고 통합적 개념의 사하형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을 설정

. 유니버셜 디자인 7원칙 중 공평, 간단과 접근성 등을 통합한 기능중시, 편리성 및 쾌적성을 중심으로 하는 쾌적한 공간, 그리고 CPTED와 방재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 창조도시 사하의 비전을 지향하는 창의적 사고를 기본 원칙으로 함

02.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SHUD) 의 적용

2.1 SHUD 체크리스트의 적용대상
2.2 맞춤형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Minimum Check 10
2.3 SHUD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실천
2.4 사업시행 단계별 SHUD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2.5 사업별 SHUD 체크리스트의 운영

SHUD 체크리스트의 적용대상

■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적용 대상의 선정

. 사하구의 생활공간 현황을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로, 공원, 공공시설물, 주거단지**로 선정

. 2017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소규모로 UD적용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민간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됨.

공공시설물 (가로 , 공원 , 공공건축물) + 민간 건축물 (권장/UD 인증제)



. 체크리스트의 적용대상으로는 사하의 공공 시설물 중에서는 골목을 포함하는 가로 전반과 중 · 소규모 공원, 그리고 경로당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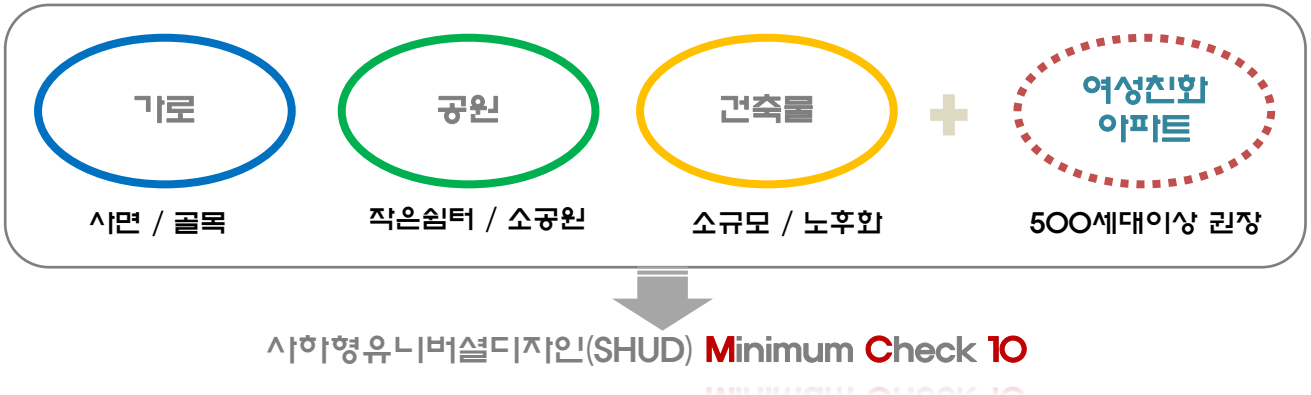
.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형 체크리스트의 작성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 등을 강구하고자 함

맞춤형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 Minimum Check 10

■ 사하의 생활공간 특성에 따른 사하형 유니버셜디자인(SHUD) 체크리스트의 이원화

a. 생활가로의 상당 부분이 사면시가지에 형성되어 있어 경사가 급하고 좁은 골목이 대부분
b. 생활 밀착형 공원인 작은 쉼터 또는 소규모 공원 신설 에 대한 요구의 급증
c. 사하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230개 중 1000㎡ 미만이 205개소로 89.1%에 달하며,
100㎡ 미만 소규모 건축물도 110개소, 전체 시설물의 47.8%로 공공시설물 다수가 소규모
d. 건축시기를 알 수 있는 171개의 시설물 중 92개소의 시설물, 53.8%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이상과 같은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하에서의 생활 밀착형 유니버셜디자인의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크리스트외에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Minimum Check 10 의 적용 : 4M미만 가로, 시설면적 100㎡ 미만의 근린 공원 및 공공건축물 및 SHUD 체크리스트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Minimum Check 10을 적용할 수 있다.

SHUD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실천

■ SHUD 체크리스트의 구성

: 관련 조례, 기존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및 운영 근거 마련

A.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CPTED),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시설조성 기준,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 관련 시설기준 등을 적용하여 실천가능한 항목으로 추출하였으며,

B.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일정규모(500세대)이상의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수용하는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유니버셜디자인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준수할 경우 유니버셜디자인(가칭)인증 아파트로 제안하고자 함.

■ SHUD 체크리스트는

. 발주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개념 공유**를 시작으로

. 설계자는 시설물들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 적용시켜 **도서를 작성**하고,

. 시공자는 현장의 각 진행과정에서 유니버셜디자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구현**한 다음,

.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의 **사후 평가** 실시를 통하여
유니버셜디자인의 시점으로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 단계별 SHUD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Step. 01
UD에 대한 기본개념 공유

■ Step 1 : UD의 기본 개념 학습

. 먼저 사업의 기획시점에서 사업 관련자는 시설의 특성을 사전 파악하여,
. 특히 배려가 필요한 시설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UD 도입 시점과 체크리스트의 내용 및 중점 항목을 충분히 파악
. 필요시 시설에 따라 예정 이용자의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해 예정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
. 경우에 따라서 UD 전문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자문

Step. 02
현장 조사

■ Step 2 : 설계자 · 발주자 · 시설 관리자가 현장 상황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확인

. 현장에서 레벨상황, 출입구높이차, 시설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주요 위치의 적정성 검토
. 부지 주출입구(또는 주요 교통시설)로부터 시설물 입구, 안내까지 유도 등의 적합성, 최단 동선 계획 등 접근성에 대한 검토
. 특히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설치 위치 및 안전성 검토
. 리모델링 또는 부분 개보수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

Step. 03
UD도입계획수립

■ Step 3 : 설계자와 발주자가 협력하여 Step2 현황조사를 정리, UD 도입계획 수립

. UD 도입 계획서(기본설계)에서는 주요 시설 이용의 목적을 파악하고,
.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이용자 특성에 따른 체크리스트 내용 및 항목을 확인

a. 필요성, 긴급성
b. 실현의 용이성
c. 대응방법의 선택

→ 우선 순위의 결정

사업시행 단계별 SHUD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Step. 04
UD 실시설계

■ Step 4 : UD 도입 계획서를 확인하면서 실시설계, UD 도입 정비서(실시 설계) 체크
. 체크리스트에서는 개별 항목에 따라 각각의 필요한 검토사항 체크
. 설계자는 각 항목을 확인하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도면 및 시방서 등의 도서를 작성

Step. 05
공 사

■ Step 5 : 공사진행 단계별 실천 사항
. 공사착수전 : 발주자는 공사착수 후 감리자에게 UD도입계획(기본설계) , UD도입 실시설계도서 및 체크리스트 인수인계
. 공사중 : 감리자는 공사 변경시 UD개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 및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완료 : 감리자는 공사변경내용 및 인계사항을 발주자에 보고
. 시설관리자에게 인계 : 발주자 및 감리자는 UD도입계획 및 설계도서, 체크리스트를 시설 관리자에 인계

Step. 06
사후평가

■ Step6 : 시설 관리자에게 건물을 인계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UD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UD에 대한 의식 향상과 향후 시설물 정비에 활용
. 사후 평가의 실시시기 및 방법 : 하자 검사시 등 이용자의 이용이 안정화된 시점에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시설 관리자 · 이용자(또는 UD에 대한 교육이 선행된 주민 모니터링 등)가 함께 진행.

사업별 SHUD 체크리스트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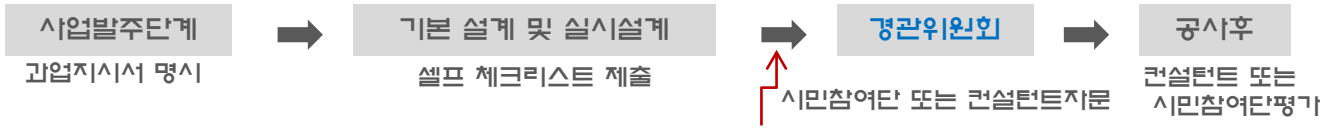
■ 공공시설물(가로, 공원, 공공건축물)

a. 공공시설물은 사업 발주단계에서 과업지시서상에 유니버셜디자인개념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b. 설계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유니버셜디자인체크리스트 개념을 적용 설계한 후, 체크리스트 항목을 셀프 체크한 다음, 필요시 컨설턴트 및 시민 참여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주담당자는 수정 보완조치 하도록 한다.

c. 경관위원회에서는 b단계에서 셀프체크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자문 또는 보완조치하며,

d. 공사 중에는 시공자, 감리자가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잘 구현하도록 하고, 공사 후 시민 참여단 또는 컨설턴트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의 실천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유지 관리자에게 인수되도록 함



■ 민간건축물 (주거단지)

a. 민간건축물은 일정규모(500세대)이상의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권장사항으로 하고, 수용된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설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b.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적용 반영된 셀프 체크리스트를 인허가시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자문 검토한다.

c. 사용 승인 전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시민 참여단 또는 컨설턴트의 확인을 거쳐 일정 수준의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이 반영되었을 경우 UD디자인 인증 단지로 인증



체크리스트

SAHA UNIVERSAL DESIGN CHECKLIST

가로

부문	세부항목	주요내용
가로	보행공간	유효폭, 유효높이, 단차, 기울기, 마감, 배수, 점자블록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차량진입구역	주차장 진입구역
	시설물 구역	시설물 구역, 우회정보, 버스정류장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 이용 편의시설
	횡단보도	설치,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설치, 진입구간
	속도저감방안	안내시설, 차폭축소 및 차로선형변경, 마감재

1.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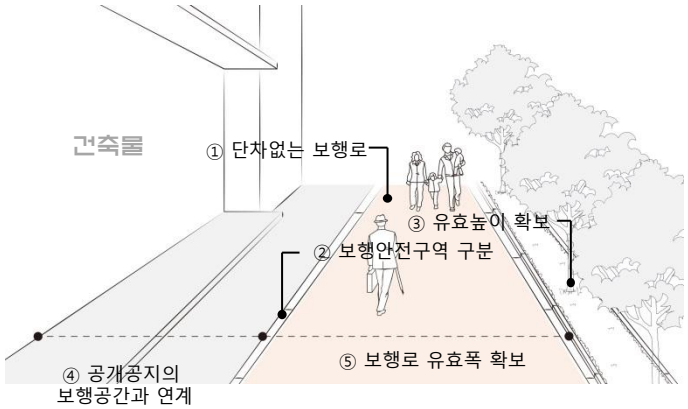
a. 보행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유효폭	보행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1-1-⑤	폭 2.0m 이상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게 한다.				
유효높이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도록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1-1-③	높이 2.1m 이상
단차	보행이동동선 상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길경우 *경사로를 병설한다.			1-1-①	*폭 1.2m이상, 증·개축 등 용도변경 시 1.2m, 유효폭 확보 어려울 때 0.9m 경사 1/12이하
기울기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종단기울기 1/18이하, 횡단기울기 1/25 이하로 한다.				
마감	바닥마감은 편평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음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틈 1cm미만
	보행안전구역은 마감재의 명도, 질감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1-1-②	
배수	보행안전구역 내에 배수구 *덮개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틈 1cm이하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이용하여 경고(점형블록) 및 방향(선형블록)을 안내한다.			1-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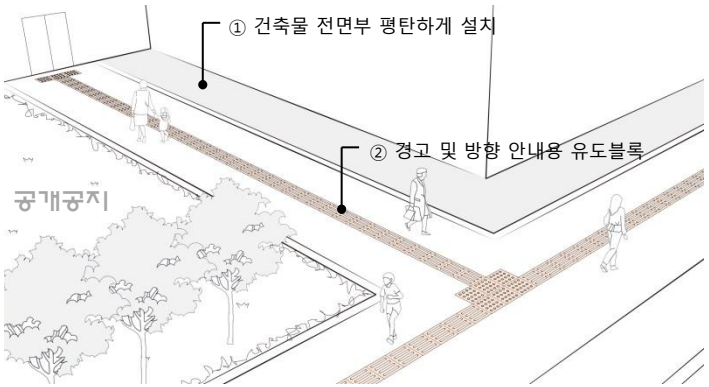
b.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로와 연속되고 평탄하게 설치한다.			1-2-①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의 단차는 대지경계선 (건축선)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개공지	보행 공간에 연계시켜 설치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1-1-④	

[그림 1 - 1]



[그림 1 - 2]



1. 가로

c. 차량진입구역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주차장 진입구역	차량진입구역은 점용구간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차량진입구역으로 인하여 보행 안전구역에 단차 및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횡단기울기 1/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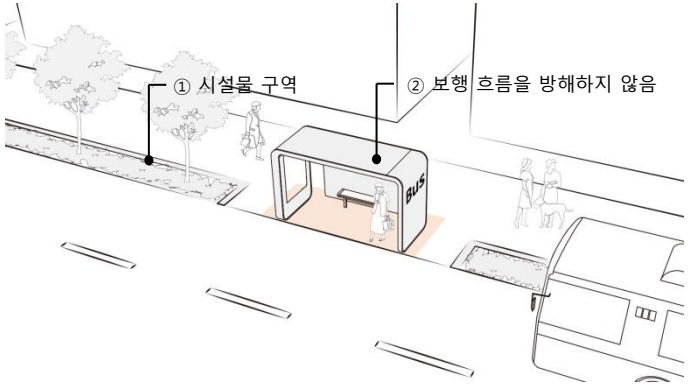
d. 시설물 구역

공통	각종 가로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한다.				
	가로수를 포함한 가로 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 내에 설치한다.			1-3-①	
우회정보	급경사로, 계단 등 이동이 불편한 동선에는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우회정보 등의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 등을 배려한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한다.			1-3-②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시각정보(문자, 그림, 외국어 등) 및 음성정보를 병행하여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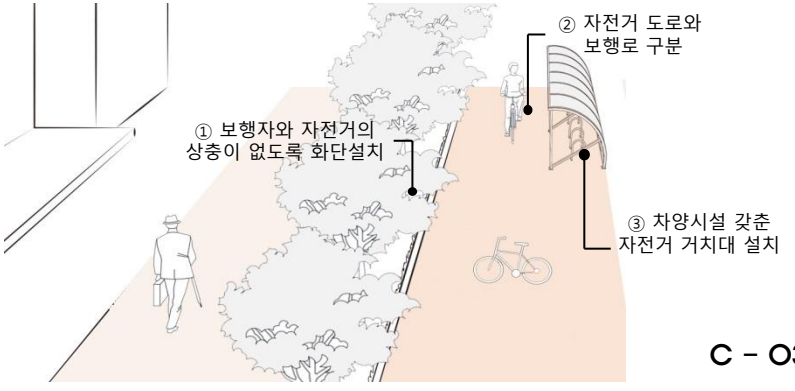
e.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은 안전하게 구분하여 설치한다.			1-4-②	
겸용도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이 없도록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 마감재 등을 설치한다.			1-4-①	
이용 편의시설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차양시설을 갖춘 거치대를 설치한다.			1-4-③	

[그림 1 - 3]



[그림 1 - 4]



1. 가로

f. 횡단보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설치	횡단보도 진입부는 전체 턱낮춤으로 하고, 폭은 보도의 대기를 위한 수평폭과 동일 이상으로 한다.			1-5-②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가 없게 한다.			1-6-③	
교통섬	긴 횡단보도는 차도와 같은 높이의 교통섬으로 조성하고, 대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면서 차량진입은 불가능한 구조로 조성 한다.			1-5-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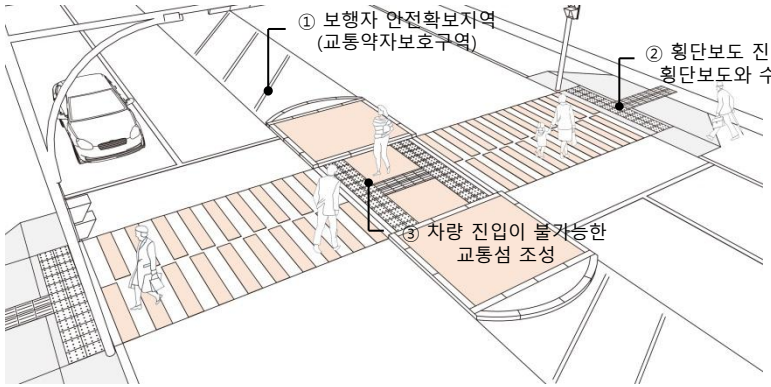
g.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바닥표시, 바닥색상 및 재료, 요철 패턴 등을 설치한다.			1-6-②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차 분리를 최소화 하고 차량저속운행을 유도한다.				
진입구간	보행자우선도로 내의 횡단보도는 보도와 단차를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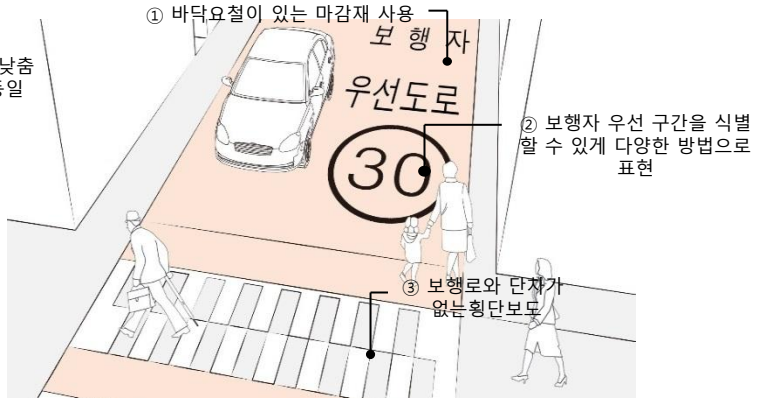
h. 속도 저감 방안

안내시설	주행 속도 저감에 대한 안내를 주요 교차로 및 보도구간에 설치한다.				
차폭 축소 및 차로 선형변경	보행자 안전확보 지역(교통약자보호구역 등)에는 차량 주행속도 저감을 위해 차도의 폭을 줄이거나 선형을 변경한다.			1-5-①	
마감재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거친 질감의 바닥 요철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1-6-①	

[그림 1 - 5]



[그림 1 - 6]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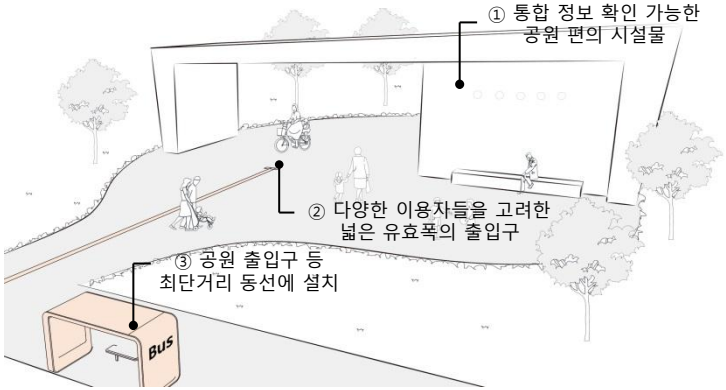
부문	세부항목	주요내용
공원	이동공간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산책로
	기능공간	화장실,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구역, 놀이터

2.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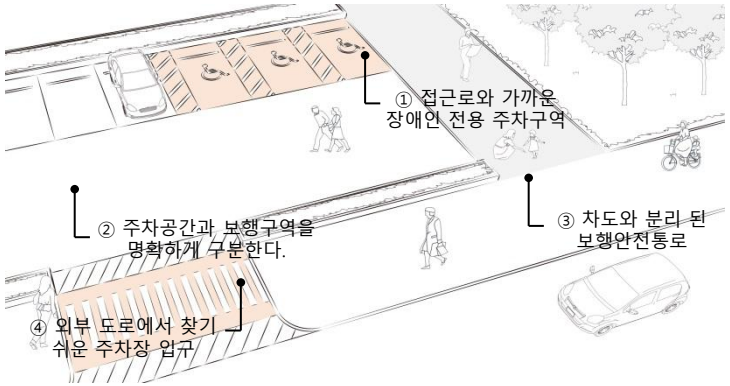
a. 이동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접근로	대중교통 및 주요 근린시설 등과 최단 거리의 동선을 확보한다.			2-1-③	
	공원 입구의 위치를 편리하고 찾기 쉽도록 한다.				
	공원까지 보행안전구역에 준하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2-1-②	폭 2.0m 이상
	공원 출입구까지의 주요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 · 안내한다.				
주출입구	공원 출입구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 유모차 이용자들을 위하여 유효폭, 형태, 마감재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조성한다.				
	공원의 편의시설과 산책로 등에 관한 통합 정보를 시각정보 및 음성정보를 병용하여 알기 쉽게 제공한다.			2-1-①	
주차장	외부 도로에서 주차장을 찾기 쉽게 안내한다.			2-2-④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가 연결 되어야 한다.			2-2-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찾기 쉽게 안내 및 유도해야 한다.			2-2-①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2-2-②	
산책로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연속되게 조성하고 접근로의 보행안전구역 바닥재질, 색상 등에 차이를 둔다.				
	원칙적으로 단차를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한다.				
	주요 경로에서 공원의 주요 시설들과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2 - 1]



[그림 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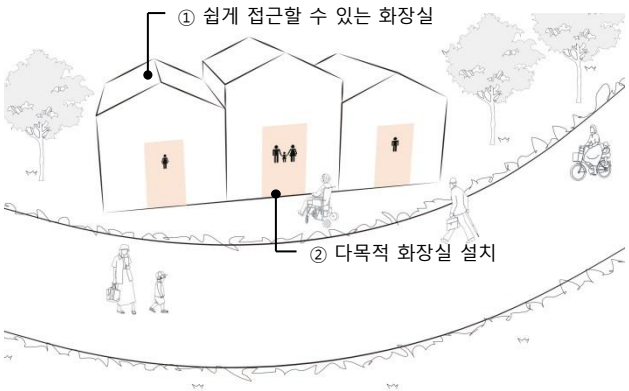


2.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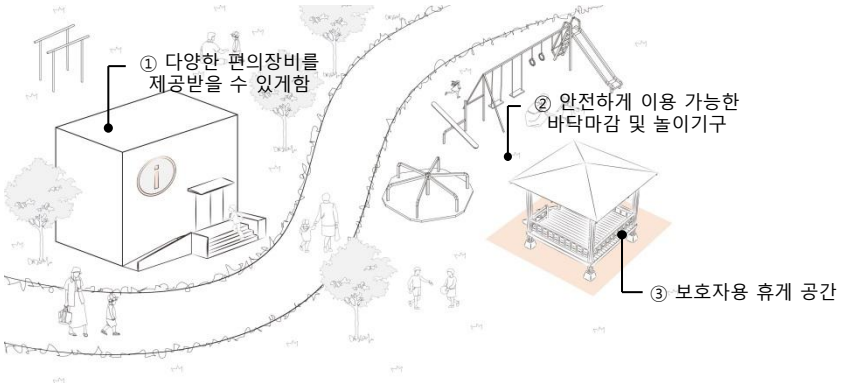
b. 기능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화장실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2-3-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한 개 이상 설치한다.			2-3-②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적정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닥에서 85cm, 40~60 lux
	24시간 방범, 경보 시스템 및 CCTV를 설치(주요 교차점, 화장실 출입구 주변, 사각지대 등) 등 안전 설비 시스템을 확보한다.				
편의시설	공원이용에 필요한 음성 안내기 및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4-①	
	방문자 센터, 매점 등은 이용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을 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유효폭 1.0m 이상
안내시설	안내정보가 문자(외국어 표기 포함) 외에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제공한다.				
휴게구역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조도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한다.				*조도 100 lux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높이의 음수대를 제공한다.				
놀이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2-4-②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보호자용 휴게공간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2-4-③	

[그림 2 - 3]



[그림 2 - 4]



공공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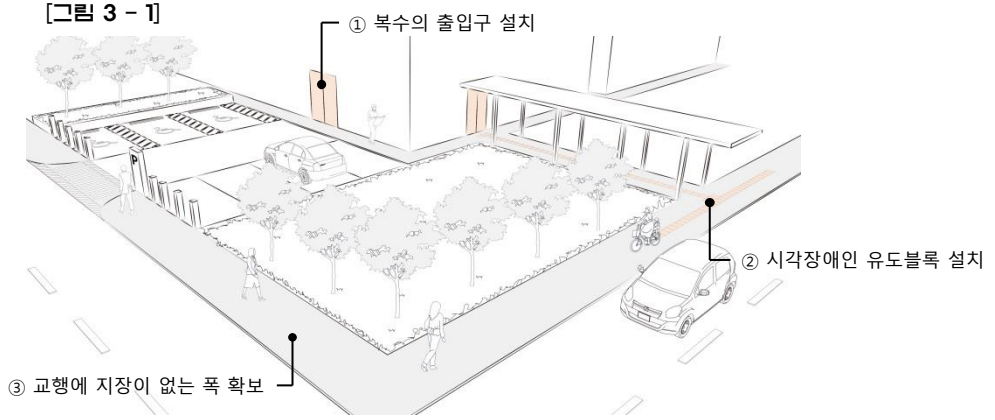
부문		세부항목	주요내용
공공 건축물	건물외부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통로, 부지 출입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사인의 설치
		계단 · 경사로	위치, 경사로 구조, 계단 구조, 난간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장애인용 주차장, 출입구, 차로 · 승차장 · 주차공간
	건물내부	주출입구	배치 및 구조
		로비	로비
		복도	배치 및 구조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생공간	일반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세면대, 탈의실, 욕실
		피난	피난
		방범	방범

3. 공공건축물(건물외부)

a.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통로	주통로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면 경사로를 병설한다.				*폭 1.2m이상, 증 · 개축 등 용도변경 시 1.2m, 유효폭 확보 어려울때 0.9m 경사 1/12이하
	부지내 통로에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 양측 모두에 설치 손잡이 높이 85cm ± 5cm
	부지내 통로에 계단 및 경사로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3-1-②	전면 0.3m에 설치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 교행에 지장이 없는 폭을 확보한다.			3-1-③	폭 120cm이상 50m마다 1.5mX1.5m 교행구역 설치
	비를 맞아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설치한다.				
	보차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시야확보를 한다.				보차 경계부분에는 분리용 공작물 설치(6cm~15cm이내) 또는 바닥재의 차별화
	배수구 등의 홈은 노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표면이 동일하도록 덮개 설치 틈새 2cm 이하
	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바닥에서 85cm, 조도 40~60LUX
부지 출입구	접근 도로에서 알기 쉽고, 출입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접한 도로가 복수인 경우는 우회하지 않도록 복수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복수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출입이 가장 편리한 동선으로 유도한다.			3-1-①	

[그림 3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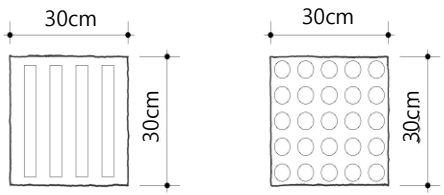


3. 공공건축물(건물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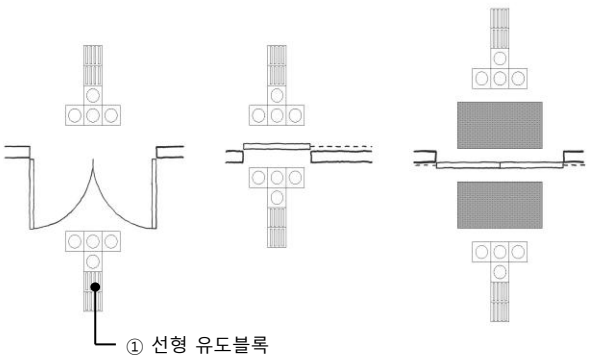
a.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부지출입구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유도한다.			3-3-①	
	선형 유도블록은 원칙적으로 직선 설치한다.				
	맨홀 등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피해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맨홀뚜껑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부착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사인의 설치	부지 출입구 주변에는 주차장, 건축물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배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4-①	
	안내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의 크기와 색채, 배치 등을 고려한다.				
	출입구 부근의 인터폰은 음성과 문자 정보 등을 조합한 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사인은 보행자 · 차량으로부터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경계용 식재는 50c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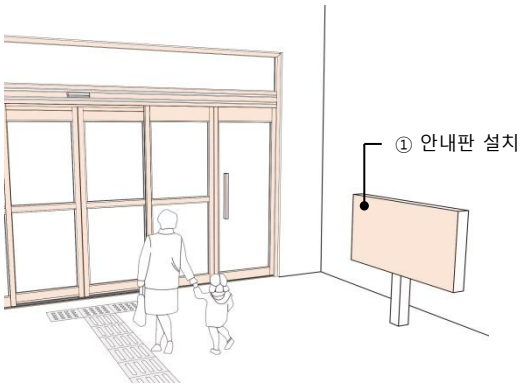
[그림 3 - 2]



[그림 3 - 3]



[그림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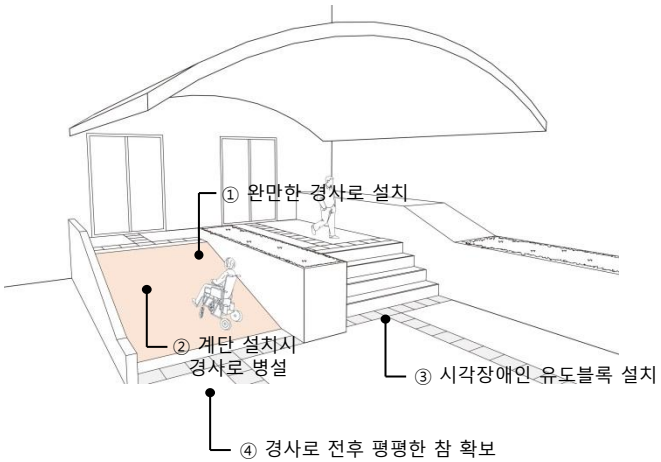


3. 공공건축물(건물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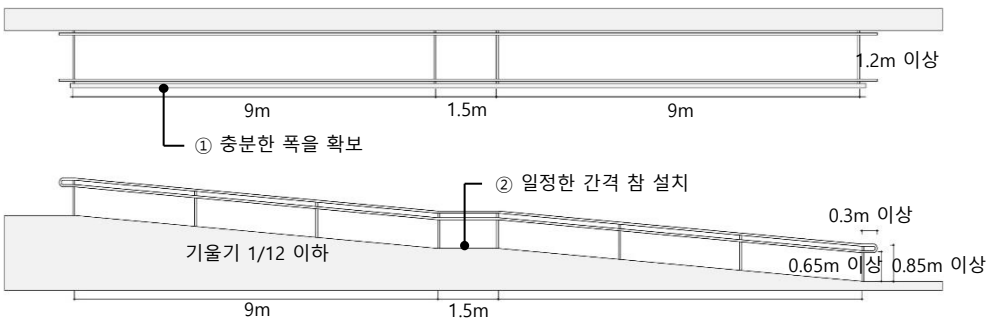
b. 계단 · 경사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위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사로를 병설하고 동일한 경로로 유도한다. (경사로를 우회시키지 않을 것)			3-5-②	
	계단과 경사로를 병설할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이동 거리가 짧은 쪽에 설치한다.			3-5-③	
경사로 구조	경사로는 휠체어 등의 사용자를 배려하여 완만하게 설치한다.			3-5-①	진행방향 경사 1/18 이하, 기울기 확보가 어려울 경우 1/12 이하
	경사로가 길어질 경우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한다.			3-6-②	높이 75cm마다 폭 150cm의 수평참, 직선경사로는 유효폭과 동일하게 완화
	보행자 · 휠체어 · 유모차 등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3-6-①	폭 120㎝이상
	경사로에는 탈륜 방지를 위해서 양쪽에 턱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논슬립 마감으로 한다.				5cm 이상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경사로의 전후에는 휠체어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평평하고 충분한 크기의 참을 확보한다.			3-5-④	1.5m x 1.5m의 활동공간 마련

[그림 3 - 5]



[그림 3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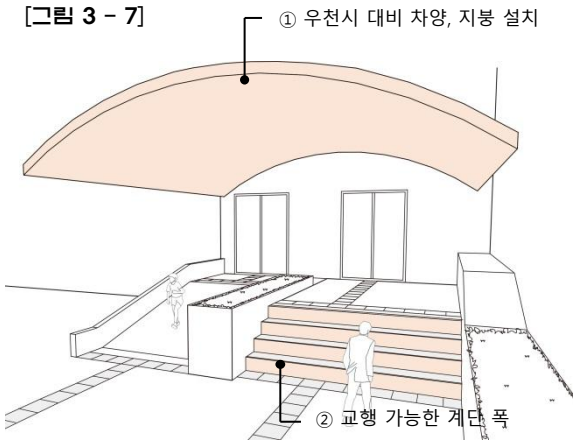


3. 공공건축물(건물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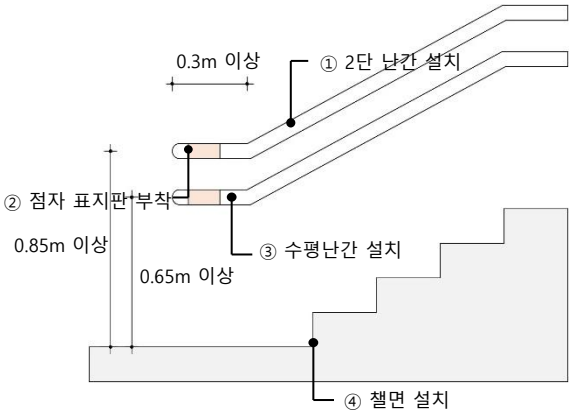
b. 계단 · 경사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계단구조	계단의 폭은 보행자끼리 교행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3-7-②	폭 1.2cm이상,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 높이 1.8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안전을 위하여 바닥면은 논슬립 마감으로하고, 계단코 및 챌면 들임을 하지 않도록 하여 넘어짐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에는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차양이나 지붕을 설치한다.			3-7-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챌면을 설치한다.			3-8-④	
난간	계단양측에 계단참을 포함, 연속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폭 3m 이상의 계단은 계단 중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손잡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하고, 잡기쉬운 형상 및 표면재질로 한다.			3-8-①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
	난간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 난간을 설치한다.			3-8-③	수평부분 0.3m 이상
	난간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3-8-②	

[그림 3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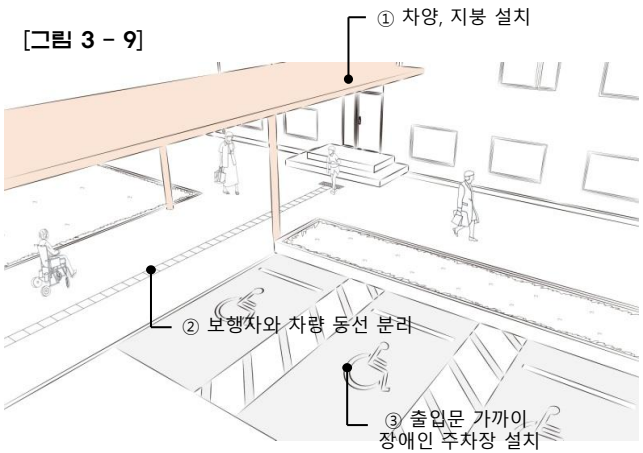
[그림 3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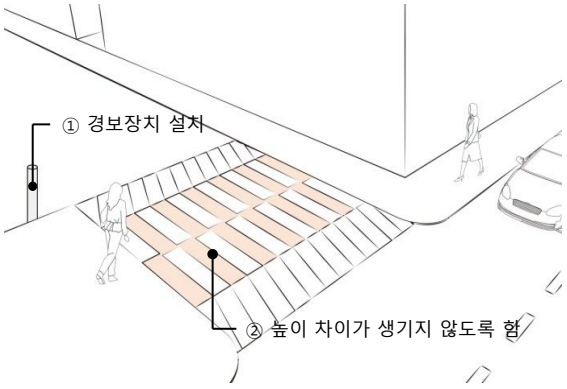
c. 주차장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편리한 위치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장애인용 주차장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되 복수의 주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배치 한다.				
	건축물의 출입문에 가깝고,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9-③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건축물의 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양 등 지붕을 설치한다.			3-9-①	유효폭 1.2m 이상
	지하 또는 입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홀 등의 입구 부근에 배치한다.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로 인하여 보행자의 진행방향에 높이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0-②	보도와 차량 진출입구 높이차 2cm 이하
	주변 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 · 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차량의 출고를 알리는 경보장치 등의 설비를 한다			3-10-①	
차로 · 승차장 · 주차공간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은 일시정지선 등으로 서행하도록 한다.			3-9-②	
	승차 공간에는 눈이나 비에 대비하여 충분한 크기의 차양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				
	주차장과 승차 공간이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근에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3 - 9]



[그림 3 - 10]



4. 공공건축물(건물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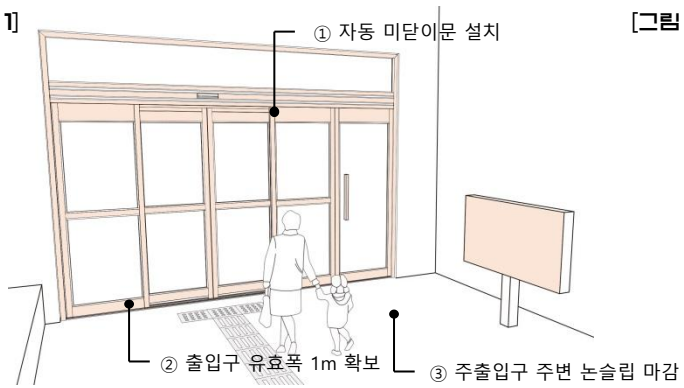
a. 주출입구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배치 및 구조	건물 안내 표시는 단지내 접근로에서 찾기 쉬운 곳에 문자 및 그림(외국어 표기)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한다.				
	주출입구 부근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장치나 점자표시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문은 자동 미닫이 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4-1-①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한다.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한다.			4-1-②	
	휠체어 · 유모차 사용자와 보행자의 교행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 폭을 확보한다.				유효폭 1.2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현관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단차없이 내외부가 평탄하고 연속된 바닥면을 유지한다.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세로 장형으로 설치한다.				
	출입구 주변 바닥은 논슬립 마감으로, 우산 등의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하고, 우산 꽂이 등은 설치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위치를 배려한다.			4-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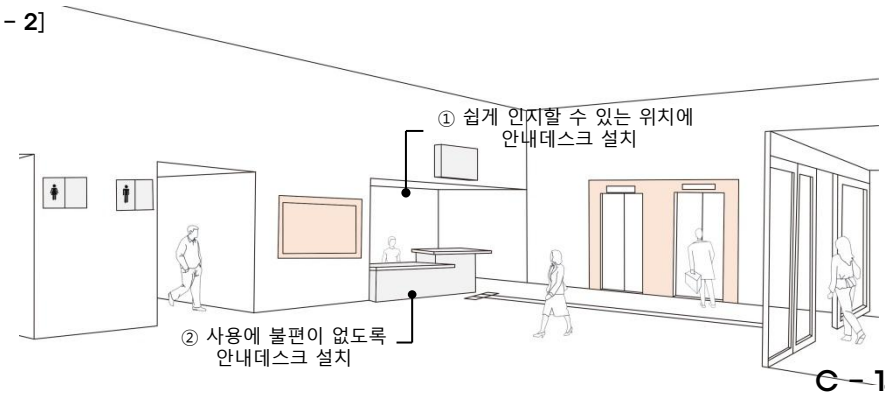
b. 로비

로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4-2-②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위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쉽도록 한다.			4-2-①	
	안내데스크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외국인 등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을 갖춘다.				

[그림 4 - 1]



[그림 4 - 2]



4. 공공건축물(건물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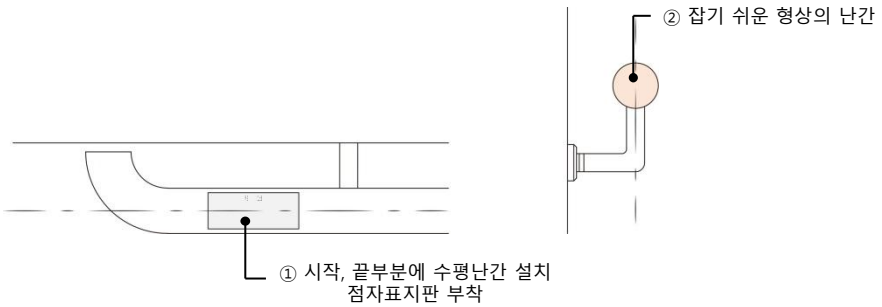
c. 복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배치 및 구조	원칙적으로 복도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경우는 근처에 경사로나 승강기를 병설한다.			4-3-②	
	복도는 보행자가 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4-3-③	유효폭 1.5m 이상, 길이 25m 이내마다 휠체어 회전공간 1.8m 이상 확보
	휠체어의 주행성 및 충돌을 고려한 벽체 및 바닥재를 사용한다.			4-3-①	
	복도의 안전 손잡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하고 잡기쉬운 형상 및 표면재질로 한다.			4-4-②	위쪽 손잡이는 O.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O.65m 내외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 난간을 설치한다.			4-4-①	수평부분 O.3m 이상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4-4-①	

[그림 4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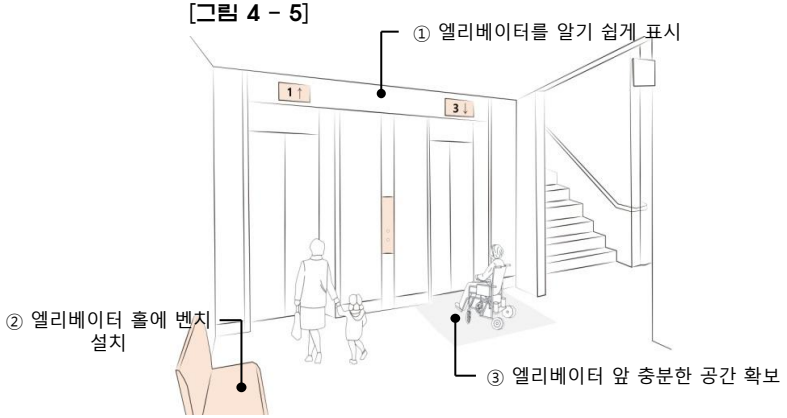
[그림 4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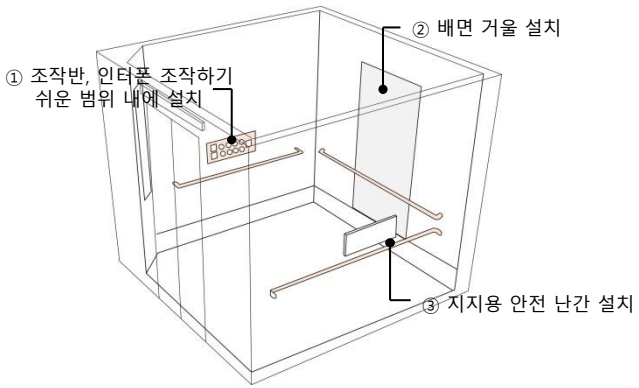
d.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엘리베이터	저층 건물일지라도 층 규모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엘리베이터홀은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5-③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복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승강 버튼이나 출지도까지 유도한다.				전면 0.3m에 점형 블록 설치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엘리베이터홀에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벤치 등을 설치한다.			4-5-②	
	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기내 안내판에 점자를 포함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엘리베이터의 도착, 승강 방향, 다음에 도착 예정인 엘리베이터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음성장치도 설치한다.			4-5-①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엘리베이터 내에는 도착, 승강방향, 출입문 개폐, 과부하 또는 비상시에는 시각 정보와 함께 음성 장치도 병행하여 안내한다.				승강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사전 음성 안내
	엘리베이터 내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넓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뒤로 내릴 수 있도록 배면거울을 설치한다.			4-6-②	0.6m 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지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4-6-③	0.8m~0.9m 높이에 연속하게 설치
	엘리베이터 내에서 조작반, 인터폰의 설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시각 장애인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범위에 설치한다.			4-6-①	0.8m~1.2m 이내에 설치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음성안내 장치 등의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한다.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그림 4 - 5]



[그림 4 - 6]



4. 공공건축물(건물내부)

e. 위생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일반 화장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한다.				유효바닥면적 2.0m X 2.1m 이상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여자 화장실은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바닥은 논슬립 마감으로 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청소하기 용이한 마감재를 선정한다.			4-7-②	
	화장지 걸이, 세정 버튼, 긴급 호출 버튼 등은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변기 및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한다.			4-8-②	
	일반 대변기 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5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한다.			4-7-③	
	일반 대변기 부스에도 수평 및 수직손잡이,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 옷 등을 걸수 있는 후크 등 편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8-①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범죄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다목적 화장실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 우선사용 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비데형 대변기, 세변기, 소변기 등의 위생기구 및 안전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등의 편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7-①	
수유실	의자나 소파, 기저귀 교환대, 아기침대, 영유아 거치대, 세면대,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기저귀 전용 휴지통 등 각종 편의설비를 설치한다.			4-9-③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수유공간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한다.			4-9-①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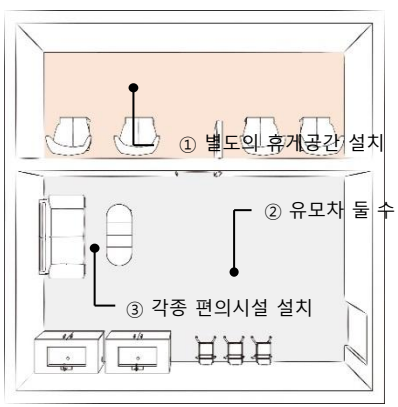
[그림 4 - 7]



[그림 4 - 8]



[그림 4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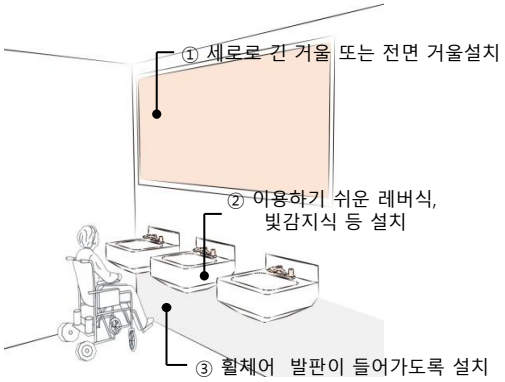


4. 공공건축물(건물내부)

e. 위생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세면대	세면대 하부를 개방시켜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도록 한다.			4-10-③	세면대는 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0.65m 이상의 위치에 부착
	수전은 레버식, 빛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4-10-②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
	신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선반의 높이도 고려한다.				
	세로로 긴 거울을 설치하여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어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10-①	세로길이 0.65m이상, 높이 0.9m 내외, 거울상단 15° 경사 또는 전면 거울설치
탈의실	접근 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탈의실과의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문턱이나 단차를 없앤다.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으로 마감한다.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체온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난방을 설치한다.				
	비상시에 구조 연락이 가능하도록 임시 대피 공간과 방재 센터 등 쌍방향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인터폰을 설치한다.				
욕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며, 냉·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샤워실은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전 및 선반을 설치한다.				유효 바닥면적 0.9m X 0.9m 또는 0.75m X 1.3m
	샤워 헤드는 수직 방향으로 슬라이드 조절 또는 두 단식을 설치한다.			4-11-①	바닥면의 기울기 1/30 이하
	바닥면은 평탄하고 논슬립 마감으로 한다.			4-11-③	
	샤워실에는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4-11-②	
	전도 등에 대비한 긴급 버튼과 끈을 욕실에서 손 닿는 범위에 설치한다.				

[그림 4 - 10]



[그림 4 - 11]



4. 공공건축물(건물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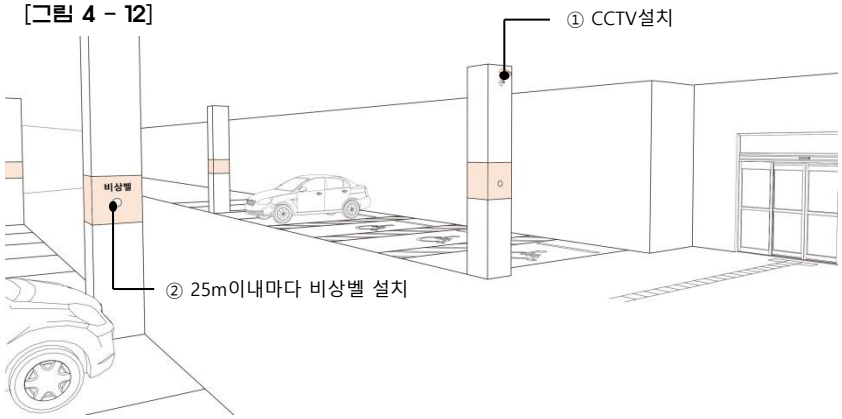
f. 피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피난	비상시 피난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이동 약자가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임시대피공간을 각층에 확보한다.				
	음성 방송, 빛의 점멸에 의한 경고, 문자 방송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피난 공간에 방재 센터 등과 쌍방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등은 사람의 출입 상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한다.				
	안전을 위해 방화 구획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한다.				
	피난구의 위치는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고, 피난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g. 방범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방범	지하주차장의 조도(전체 평균 130 lux~200 lux)는 기능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주출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필요한 위치에 지상 170cm 높이에 사물 식별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한다.			4-12-①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길이 방향 25m 이내마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도색 등을 차별화한다.			4-12-②	

[그림 4 - 12]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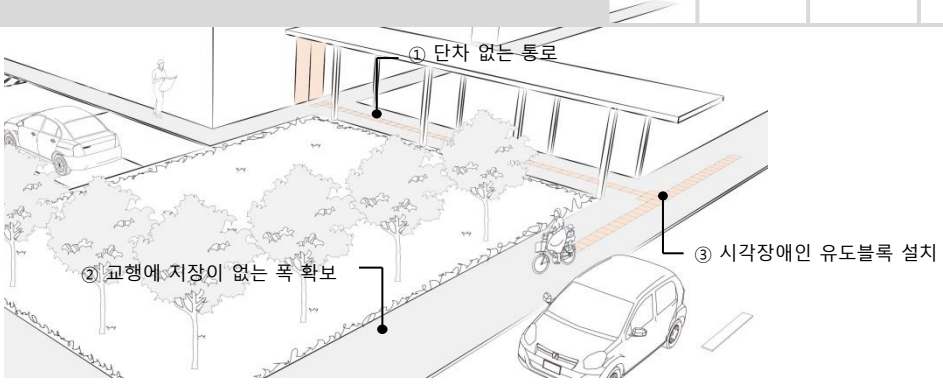
부문		세부항목	주요내용
주거단지	외부공간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통로, 부지 출입구,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사인의 설치
		계단 · 경사로	위치, 경사로 구조, 계단 구조, 난간
		주차장	주차장 진출입, 차로 · 승차장 · 주차공간, 장애인용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내부공간	동별 주출입구	배치 및 구조
		복도	배치 및 구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위생공간	화장실 공통, 공용화장실(다목적 화장실 포함), 세대 화장실(욕실 포함)
		피난	피난
		방범	방범
	여성친화	여성친화 주거	어린이 안전구역, 안심길, 여성친화

5. 주거단지(외부공간)

a.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통로	누구나 동일 경로에서 안전하게 동별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유도한다.				
	주통로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면 *경사로를 병설한다.			5-1-①	*폭 1.2m이상, 중 · 개축 등 용도변경 시 1.2m, 유효폭 확보 어려울때 0.9m 경사 1/12이하
	부지내 통로에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 양측 모두에 설치 손잡이 높이 85cm ± 5cm
	부지내 통로에 계단 및 경사로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전면 0.3m에 설치
	부지내 통로에 경사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한다.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 교행에 지장이 없는 폭을 확보한다.			5-1-②	폭 120cm이상 50m마다 1.5mX1.5m 교행구역 설치
	비를 맞아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설치한다.				
	보차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시야확보를 한다.				보차 경계부분에는 분리용 공작물 설치(6cm~15cm이내) 또는 바닥재의 차별화
	배수구 등의 홈은 노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표면이 동일하도록 덮개 설치 틈새 2cm 이하
	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바닥에서 85cm 조도 40~60LUX
부지 출입구	출입구와 통로는 사인의 확인이 쉽도록 하고 시야확보가 좋은 공간에 배치한다.				
	부지 내외의 보도레벨은 연속성, 평탄성 등을 확보한다.				
	접근 도로에서 알기 쉽고, 출입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접한 도로가 복수인 경우는 우회하지 않도록 복수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복수의 출입구를 설치할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출입이 가장 편리한 동선으로 유도한다.			5-1-③	

[그림 5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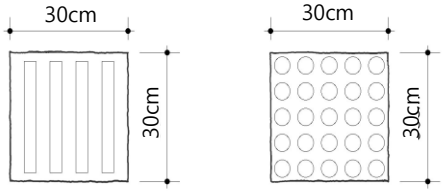


5. 주거단지(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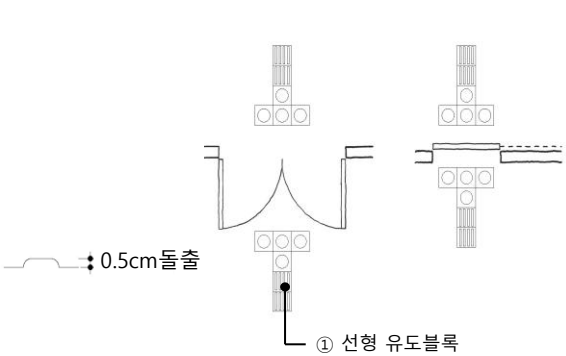
a. 부지 출입구 · 부지 내 통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부지출입구에서 동별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유도한다.				
	선형 유도블록은 원칙적으로 직선 설치한다.			5-3-①	
	부지경계 부분에는 점형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맨홀 등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피해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맨홀뚜껑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부착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사인의 설치	부지 출입구 주변에는 주차장, 건축물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배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5-4-①	
	안내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의 크기와 색채, 배치 등을 고려한다.				
	동별 주출입구 부근의 인터폰은 음성과 문자 정보 등을 조합한 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사인은 보행자 · 차량으로부터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경계용 식재 50cm 이하
	부지 주출입구 부근에는 대중 교통이용을 포함한 주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외벽 재료와 색채, 주변 경관 및 식재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사인물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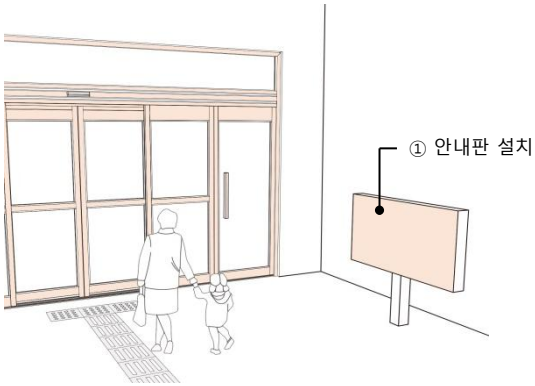
[그림 5 - 2]



[그림 5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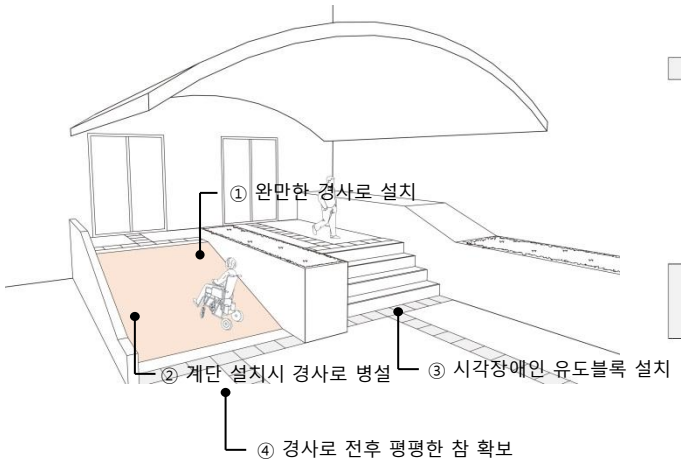
[그림 5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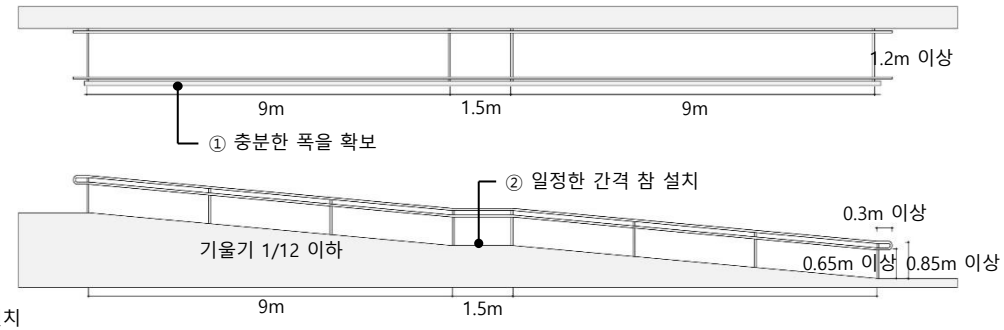
b. 계단 · 경사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위치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사로를 병설하고 동일한 경로로 유도한다. (경사로를 우회시키지 않을 것)			5-5-②	
	계단과 경사로를 병설할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이동 거리가 짧은 쪽에 설치한다.			5-5-③	
경사로 구조	경사로는 휠체어 등의 사용자를 배려하여 완만하게 설치한다.			5-5-①	진행방향 경사 1/18 이하, 기울기 확보가 어려울 경우 1/12 이하
	경사로가 길어질 경우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한다.			5-6-②	높이 75cm마다 폭 150cm의 수평참, 직선경사로는 유효폭과 동일하게 완화
	보행자 · 휠체어 · 유모차 등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5-6-①	폭 120㎝이상
	경사로에는 탈륜 방지를 위해서 양쪽에 턱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논슬립 마감으로 한다.				5cm 이상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경사로 상하부 전체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5-5-③	
	경사로의 전후에는 휠체어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평평하고 충분한 크기의 참을 확보한다.			5-5-④	1.5m x 1.5m의 활동공간 마련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바닥 조명을 설치한다.				

[그림 5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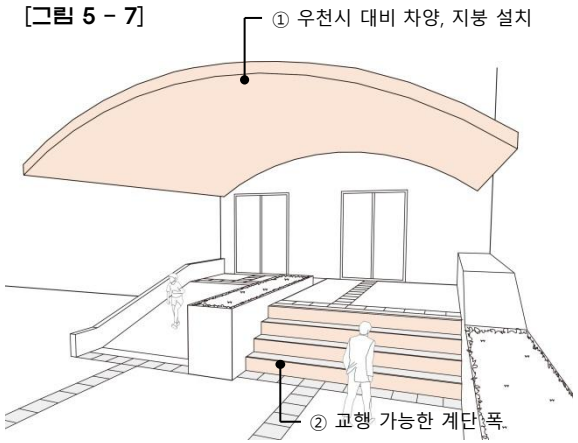
[그림 5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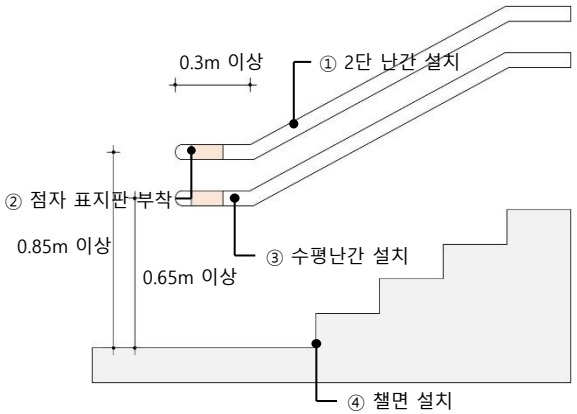
b. 계단 · 경사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계단구조	계단의 폭은 보행자끼리 교행 가능하도록 확보한다.			5-7-②	폭 2.0cm이상, 옥외 피난계단은 1.2m 이상, 높이 1.8m이내마다 수평 참 설치
	안전을 위하여 바닥면은 논슬립 마감으로하고, 계단코 및 챌면 들임을 하지 않도록 하여 넘어짐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동별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에는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차양이나 지붕을 설치한다.			5-7-①	
	계단 상하부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계단폭 전체에 설치한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챌면을 설치한다.			5-8-④	
난간	계단양측에 계단참을 포함, 연속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폭 3m 이상의 계단은 계단 중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손잡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하고, 잡기쉬운 형상 및 표면재질로 한다.			5-8-①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
	난간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 난간을 설치한다.			5-8-③	수평부분 0.3m 이상
	난간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5-8-②	

[그림 5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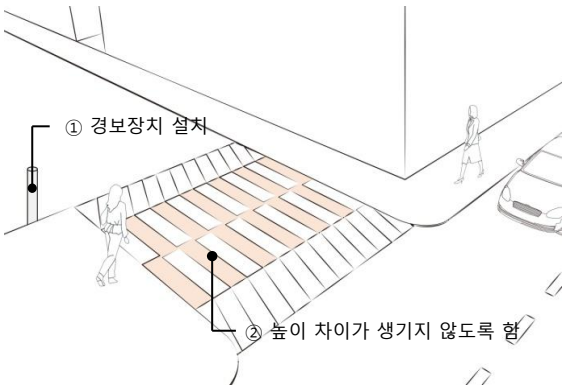
[그림 5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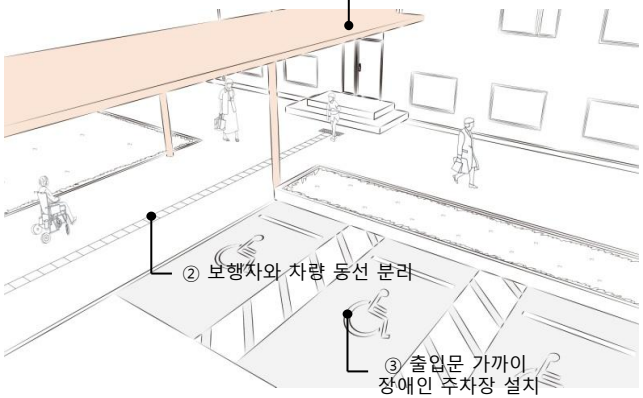
c. 주차장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주차장 진출입	주차장 출입구로 인하여 보행자의 진행방향에 높이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9-②	보도와 차량 진출입구 높이차 2cm 이하
	안내 표시나 식재는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주변 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 · 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차량의 출고를 알리는 경보장치 등의 설비를 한다			5-9-①	
차로 · 승차장 · 주차공간	주차장에서 동별 주출입구까지 최단 동선으로 배치한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은 일시정지선 등으로 서행하도록 한다.			5-10-②	
	지하 또는 입체 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 홀 등에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승하차 공간에는 눈이나 비에 대비하여 충분한 크기의 차양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			5-10-①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는 조명 계획을 한다.				보행통로 50 lux, 주차 구역 및 차로 10lux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5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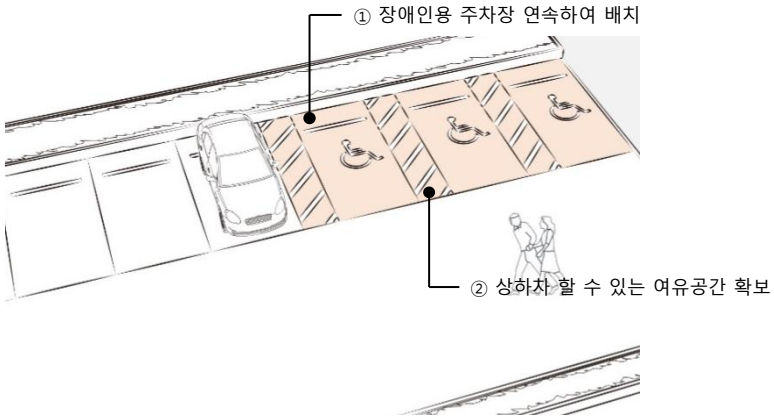
[그림 5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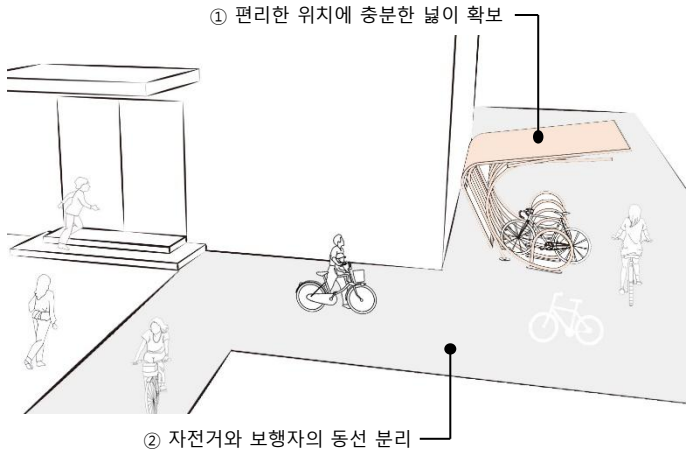
c. 주차장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장애인용 주차장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되 복수의 주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배치 한다.			5-11-①	
	동별 주출입구의 출입구에 가깝고,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10-③	
	동별 주출입구의 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우천시에 대비하여 차양 등 지붕을 설치한다.				
	지하 또는 입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홀 등의 입구 부근에 배치한다.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장애인 주차면의 양측에 편리하게 상하차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5-11-②	주차면 폭 3.5m 이상, 길이 5.0.m 이상, 평행주차 폭 2.0m 이상, 길이 6.0m이상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5-12-②	유효폭 1.2m 이상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편리한 위치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5-12-①	
	원칙적으로 동별 주출입구 주변에 분산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통합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 - 11]



[그림 5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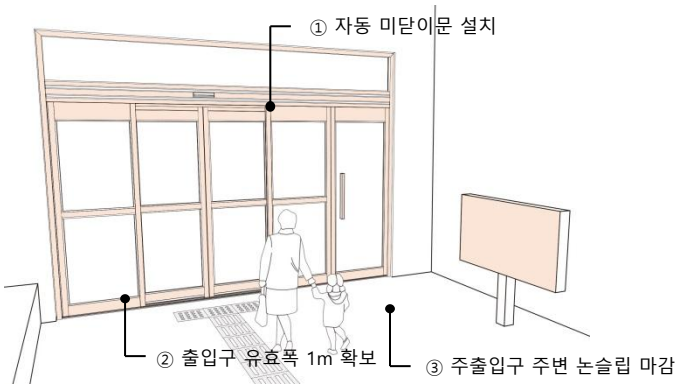


6. 주거단지(내부공간)

a. 동별 주출입구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배치 및 구조	동별 주출입구는 부지내 주접근로에서 최단거리로 배치한다.				
	안내 표시는 단지내 접근로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곳에 문자 및 그림(외국어 표기)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한다.				
	동별 주출입구 부근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장치나 점자표시를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방문확인을 위한 인터폰은 동별 주출입구에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우천시를 배려하여 차양을 설치한다.				
	동별 주출입문은 자동 미닫이 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6-1-①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한다.				
	모든 출입문은 휠체어 · 유모차 사용자와 보행자의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한다.			6-1-②	유효폭 1.2m 이상
	현관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단차없이 내외부가 평탄하고 연속된 바닥면을 유지한다.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동별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세로 장형으로 설치한다.				
	동별 주출입구 주변 바닥은 논슬립 마감으로, 우산 등의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6-1-③	
	현관홀이 있을 경우 중앙에 안내데스크(안내원 또는 무인 방문확인 시스템)를 설치한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코어는 동별 출입구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배치한다.				

[그림 6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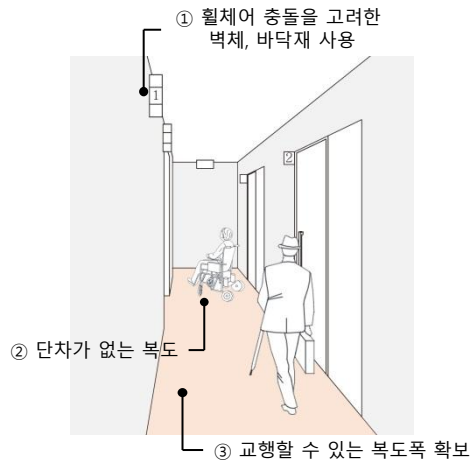


6. 주거단지(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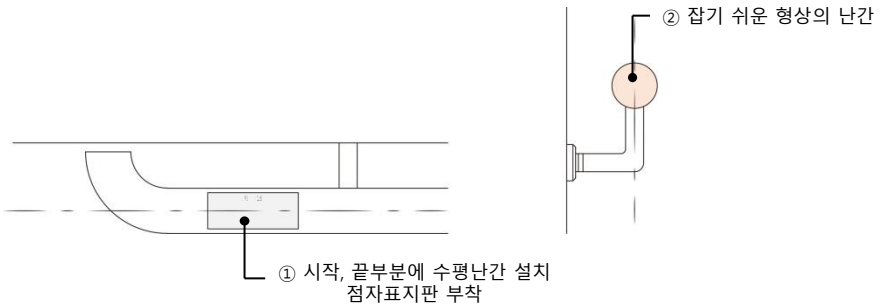
b. 복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배치 및 구조	원칙적으로 복도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경우는 경로상에 승강기를 설치한다.			6-2-②	
	세대 현관에 이르는 복도 및 코어의 배치는 단순하고 알기 쉽도록 한다.				
	복도는 보행자가 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6-2-③	유효폭 1.5m 이상, 길이 25m 이내마다 휠체어 회전공간 1.8m 이상 확보
	계단과 인접하는 복도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휠체어의 주행성 및 충돌을 고려하여 벽체 및 바닥 마감재를 선정한다.			6-2-①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복도의 안전 손잡이는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하고 잡기쉬운 형상 및 표면재질로 한다.			6-3-②	위쪽 손잡이는 O.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O.65m 내외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 난간을 설치한다.			6-3-①	수평부분 O.3m 이상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6-3-①	

[그림 6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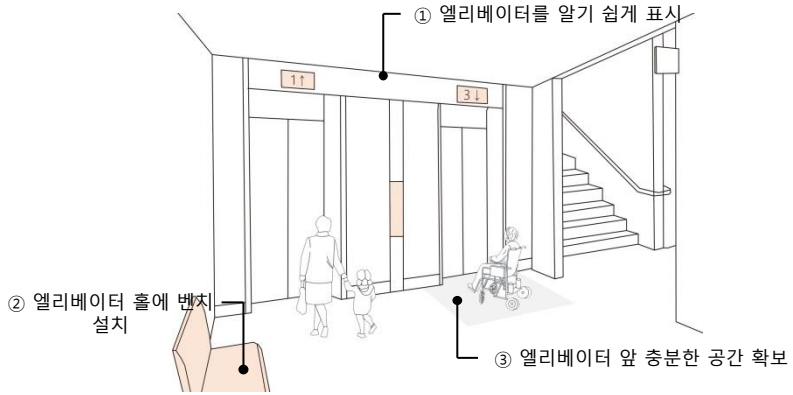
[그림 6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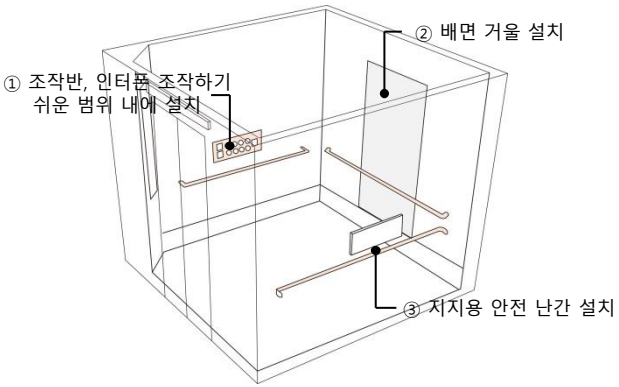
c. 엘리베이터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4-①	
	엘리베이터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6-4-③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복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승강 버튼이나 족지도까지 유도한다.				전면 0.3m에 점형 블록 설치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엘리베이터홀에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벤치 등을 설치한다.			6-4-②	
	해당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기내 안내판에 점자를 포함하여 안내 한다.				
	엘리베이터홀에서 도착, 승강 방향, 다음에 도착 예정인 엘리베이터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음성장치도 설치한다.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엘리베이터 내에는 도착, 승강방향, 출입문 개폐, 과부하 또는 비상시에는 시각 정보와 함께 음성 장치도 병행하여 안내한다.				승강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사전 음성 안내
	엘리베이터 내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넓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뒤로 내릴 수 있도록 배면거울을 설치한다.			6-5-②	0.6m 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필요시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지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6-5-③	0.8m~0.9m 높이에 연속하게 설치
	엘리베이터 내에서 조작반, 인터폰의 설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시각 장애인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범위에 설치한다.			6-5-①	0.8m~1.2m 이내에 설치

[그림 6 - 4]



[그림 6 - 5]



d. 위생공간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화장실 공통	화장실 내의 통로 및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6-6-③	유효폭 0.8m 이상
	바닥은 논슬립 마감으로 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청소하기 용이한 마감재를 선정한다.			6-6-②	
	화장지 걸이, 세정 버튼, 긴급 호출 버튼 등은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변기 및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한다.			6-7-②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며, 냉·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공용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포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한다.				유효바닥면적 2.0 X 2.1 이상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는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다목적 화장실에는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목적 화장실에는 비데형 대변기, 세변기, 소변기 등의 위생기구 및 안전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 교환대 등의 편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6-6-①	
	세로로 긴 거울을 설치하여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어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7-①	세로길이 0.65m이상, 높이 0.9m 내외, 거울상단 15° 경사 또는 전면 거울설치
세대 화장실 (욕실 포함)	세대 화장실 중 1개소 이상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6-8-②	
	수전은 레버식, 빛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6-8-①	
	샤워실은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전 및 선반을 설치한다.			6-8-③	유효 바닥면적 0.9m X 0.9m 또는 0.75m X 1.3m
	바닥면은 평탄하고 논슬립 마감으로 한다.			6-8-③	

[그림 6 - 6]



[그림 6 - 7]



[그림 6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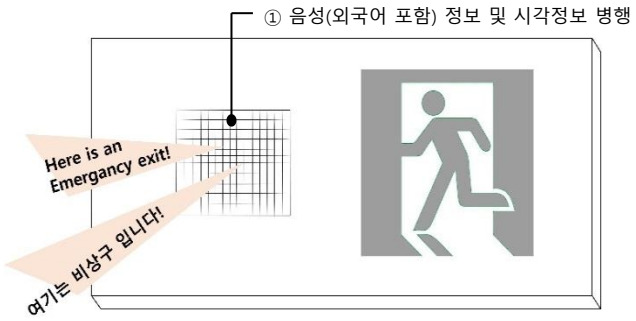


6. 주거단지(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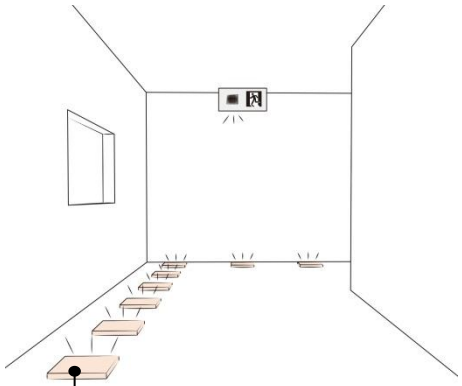
f. 피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피난	비상시 피난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이동 약자가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임시대피공간을 각층에 확보한다.				
	음성 방송, 빛의 점멸에 의한 경고, 문자 방송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6-9-① 6-10-①	
	피난 공간에 방재 센터 등과 쌍방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등은 사람의 출입 상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한다.				
	안전을 위해 방화 구획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한다.				
	피난구의 위치는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하고, 피난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6-11-②	
	외기에 면한 2㎡ 이상의 대피용 발코니를 세대당 1개소 이상 확보한다.			6-1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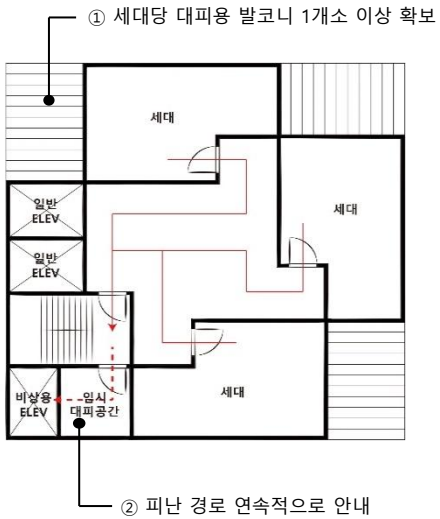
[그림 6 - 9]



[그림 6 - 10]



[그림 6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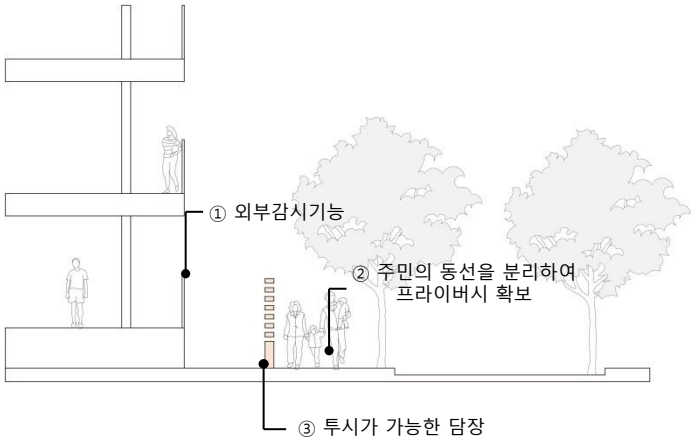


6. 주거단지(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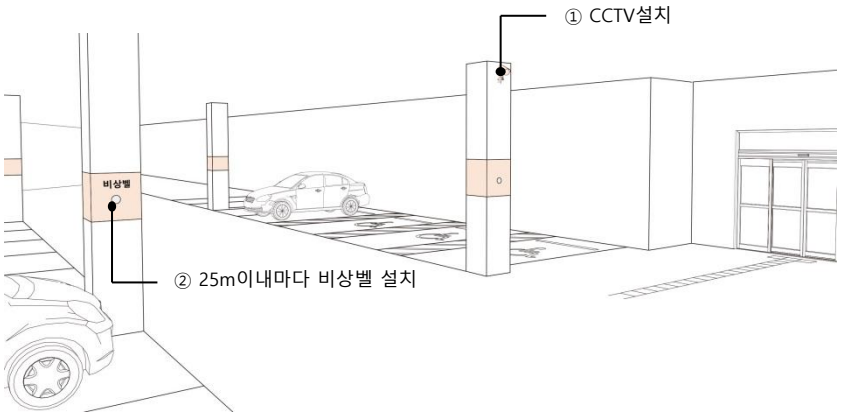
g. 방범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방범	방문자 이용 가능 영역 및 출입 제한 영역이 명확하고 주민의 일상 동선과는 분리한다.			6-12-②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창이나 식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한다.			6-12-③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등은 사람의 출입 상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6-12-①	
	주동 출입구(50lux) 및 내부 공용공간(현단, 계단실, 복도/100~150lux)의 조도를 확보한다.				
	쓰레기 처리장의 작업을 위해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동별 주출입구, 계단실, 복도 등 필요한 부분에는 센서등을 설치한다.				
	지하주차장의 조도(전체 평균 130 lux~200 lux)는 기능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주출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필요한 위치에 지상 170xm 높이에 사물 식별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한다.			6-13-①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길이 방향 25m 이내마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도색등을 차별화한다.			6-13-②	

[그림 6 - 12]



[그림 6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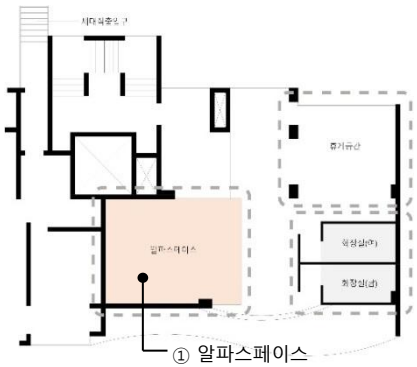


7. 주거단지(여성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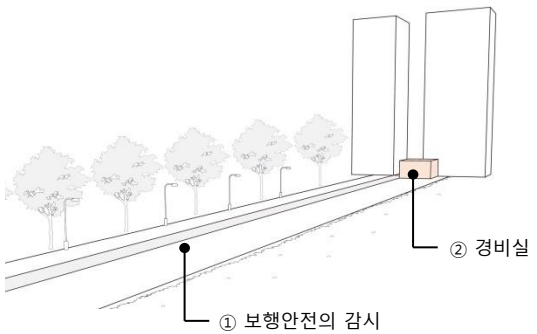
a. 여성친화 주거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이미지	비고
어린이 안전구역	여성 전용 시설(여성 플라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00세대 이상의 단지
	어린이 안전구역(어린이 놀이터, 차량 승하차장, 휴게시설 등)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설치한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차량의 승하차장을 설치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휴게시설 및 경비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어린이 놀이터와는 별도로 모험놀이 공간과 같은 교육기능을 가진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구역(어린이 놀이터, 차량 승하차장, 휴게시설 등)은 세대 내에서 어린이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 및 CCTV를 설치한다.				500세대 이상의 단지
안심길	부지내 여성친화 보도 및 안심귀갓길을 조성한다.			7-2-①	바닥에서 85cm, 조도 40~60 lux 확보, 주요지점 CCTV 설치
	주요교통시설로부터 안심귀갓길과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여성친화	주동 출입구에는 경비시스템 및 홈오토 시스템을 결합한다.			7-3-①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내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다.				
	각 동별 사용자 평균 전용면적 이상의 알파스페이스(손님접대, 공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공간)를 설치한다.			7-1-①	
	일반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접근 및 수거, 분리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설치한다.				
	단위 세대내 주부의 취미생활이나 작업을 위한 여성 전용의 공간을 설치한다.				
	주방과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다.				
	부부욕실과 연결된 파우더룸(드레스룸)이 설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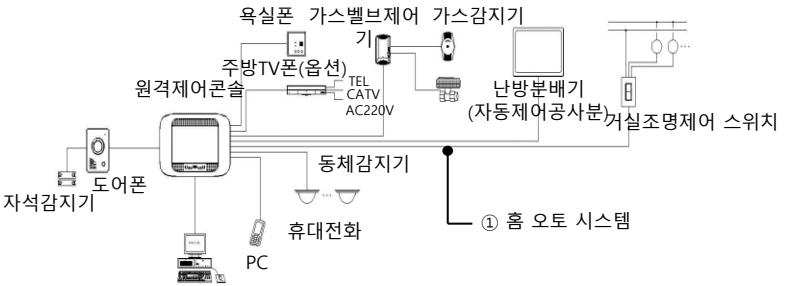
[그림 7 - 1]



[그림 7 - 2]



[그림 7 - 3] 무인경비설비 가스벨브제어 실별난방제어 거실조명제어



Minimum Check

10

■ Minimum Check 10 가 로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고
가로	1. 보행이동동선 상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길경우 *경사로를 병설한다.				*폭 1.2m이상, 중·개축 등 용도변경 시 1.2m, 유효폭 확보 어려울 때 0.9m 경사 1/12이하
	2. 바닥마감은 편평하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음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틈 1cm미만
	3.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이용하여 경고(점형블록) 및 방향(선형블록)을 안내한다.				
	4.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의 단차는 대지경계선 (건축선)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5. 각종 가로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한다.				
	6. 가로 시설물은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 구역 내에 집중해서 설치한다.				
	7. 가로 시설물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시각정보(문자, 그림, 외국어 등) 및 음성정보를 병행하여 제공한다.				
	8. 횡단보도는 가급적 고원식 교차로로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는 전체 턱낮춤으로 한다.				
	9.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차 분리를 최소화 하고 보도와 단차를 없앤다.				
	10. 보행자 안전확보 지역(교통약자보호구역 등)에는 차량 주행속도 저감을 위해 차도의 폭을 줄이거나 선형을 변경한다.				

■ Minimum Check 10 공 원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고
공원	1. 대중교통 및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최단 거리의 동선을 확보한다.				
	2. 공원 출입구까지의 주요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 · 안내한다.				
	3. 공원 출입구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 유모차 이용자들을 위하여 유효폭, 형태, 마감재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조성한다				
	4. 공원 이용안내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시각정보(외국어포함) 및 음성정보를 병용하여 알기 쉽게 제공한다.				
	5.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차로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6.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한 개 이상 설치한다.				
	7. 24시간 방범, 경보 시스템 및 CCTV를 설치(주요 교차점, 시설물 출입구 주변, 사각지대 등) 등 안전 설비 시스템을 확보한다.				
	8.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조도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한다.				*조도 100 lux 이상
	9.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를 설치한다.				
	10. 놀이터를 포함하여 아이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보호자용 벤치 등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 Minimum Check 10 건 물 외 부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고
건물 외부	1. 주통로에는 단차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난간 및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2. 접근 도로에서 알기 쉽고, 출입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데 접한 도로가 복수인 경우는 우회하지 않도록 복수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3.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부지출입구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유도한다.				
	4. 부지 출입구 주변에는 주차장, 건축물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배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의 크기와 색채, 배치 등을 고려한다.				
	5. 경사로는 보행자 · 휠체어 · 유모차 등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 탈륜 방지를 위해 양쪽에 턱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논슬립 마감으로 하고 경사로가 길어질 경우 일정간격으로 참을 설치한다.				*폭 1.2m이상, 증 · 개축 등 용도변경 시 1.2m, 유효폭 확보 어려울 때 0.9m 경사 1/12이하
	6.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 주차장 연결 통로, 승차공간에는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차양이나 지붕을 설치한다.				
	7. 모든 난간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난간을 설치하고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 및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8.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은 일시정지선 등으로 서행하도록 한다.				
	9. 부지 및 건물 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설치한다.				
	10. 주출입문 및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을 확보하고, 자동문 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 Minimum Check 10 건 물 내 부

평가항목	체크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비고
건물 내부	1. 복도는 보행자가 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폭 1.2m이상, 회전가능 공간 1.5m
	2. 엘리베이터의 도착, 승강 방향, 다음에 도착 예정인 엘리베이터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음성장치도 설치한다.				
	3. 엘리베이터 내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넓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뒤로 내릴 수 있도록 배면거울을 설치한다.				
	4.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고, 양성평등이 적용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5. 세면대 하부를 개방시켜 휠체어 사용자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세로로 긴 거울을 설치하여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어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비상시 피난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이동약자가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임시 대피공간을 한군데 이상 확보한다.				
	7. 음성 방송, 빛의 점멸에 의한 경고, 문자 방송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8.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한다.				
	9. 주출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필요한 위치에 지상으로부터 적절한 높이에, 사물 식별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한다.				
	10.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1개소 이상 알기쉬운 곳에 설치하고, 주차면 길이방향 25m 이내마다 비상벨을 추가 설치, 설치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도색 등을 차별화한다.				